



폐기물부담금 제도 안내

System of Waste Reduction at Works

환경부 자료제공

국제 유가 상승이 가져온 원료가 상승 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지난 2002년 12월 개정되면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이 합성수지원료에서 플라스틱제품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내는데 이때 투입되는 원료량으로 환산해 이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당 수십만원에 수천만원 부담금을 내는 등 전체 중소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이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플라스틱 업계의 어려움을 가증시키고 있다. 본 고에서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소개하고 그 대상품목과 산출기준을 통해 업계의 공동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본다.

- 편집자 주 -

1.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특정 지정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을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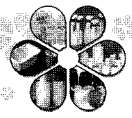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 및 폐기물관리가 어려운 제품을 대상품목으로 하고, 부담금 산출요율은 해당 제품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법률로 규정한다.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된다.

1-1. 사업자 환경책임과 폐기물부담금

1)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관하여 제조·수입업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은 점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중전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소비까지만 책임을 지고 제품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 책임은 배출자(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현재는 제품의 폐기물 책임에 대하여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2)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의 폐기물문제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역할분담에 관한 것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표 1] 주요 소재별 재활용 현황, '00년 기준

품목별	종이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재활용률	59.8%	63.1%	67.4%	15%

Responsibility)와 함께 이를 실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일본 등 OECD 가입국가에서는 자국의 여건에 따라 이와 유사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을 목표로 1992년 제정되어 2002년도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과 함께 전면 개정됐다.

2) 자원절약과 폐기물발생 억제제를 위한 폐기물부담금제도와 1회용품 사용억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리배출표시 제도 등을 담고 있다.

2. 폐기물부담금 제도 주요개선 사항

2-1.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축소

1)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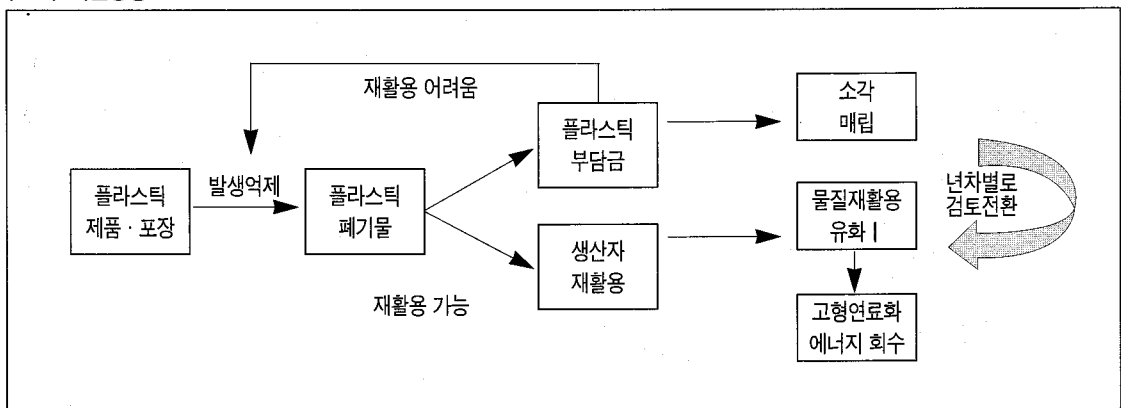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부담금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생산자들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다른 용기와의 형평성 결여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소각을 줄임으로써 환경부하 최소화가 필요했다.

2) 개선 내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는 생산자의무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복합재질 과자용기, 리튬 전지)했고 재활용이 곤란한 품목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존속했다.

기존 9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변경했다.

[표 2] 개선방향



2-2.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부과

1) 개선 배경

플라스틱류의 연간 사용량은 400만톤에 달하나 재활용률(14.9%)은 여타 소재보다 매우 저조하여 재활용확대를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 구축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① 종전에는 실질적인 원인자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자에게 직접적인 비용부담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원료인 합성수지 생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이 논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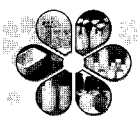
② 규제개혁위원회 의결(98년 12월) 등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축소·폐지토록 했다.

[표 3]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및 산출기준

품 목	종별및규격	요율및금액	
1.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	가. 살충제용기 · 500ml이하 · 500ml초과	개당	7원
		개당	16원
	나. 유독물용기 · 500ml이하 · 500ml초과	개당	6원
		개당	11원
2. 화장품	가. 유리병 · 30ml이하 · 30ml초과 100ml이하 · 100ml초과	개당	1원
		개당	3원
		개당	4.5원
3. 부동액	부동액	l 당	30원
4. 껌	껌	판매가의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27%)	0.27%
5. 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1.2원
6. 담 배	담배	20개비당	4원
7. 플라스틱제품 ※최초시행연도 - 2003년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관 제품을 제외한다)· 포장용플라스틱제품· 기타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합성수지 투입 kg당 3.8원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건축용플라스틱제품·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 관 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끈· 로프, 사무· 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비 고〉

- 1호(살충제· 유독물제품) 및 2호(화장품)는 제품의 포장용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용기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 부과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 유독물제품·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 화장품 유리병
- 3호(부동액)은 자동차, 군수 차량, 건설기계,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함
- 수입의 경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함



[표 4]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상세

대상 품목	종별 및 규격
제 1 차 플라스틱제품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한 스트립, 포일, 필름, 시트, 판, 봉, 관 등의 1차 형태의 플라스틱제품
	예시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필름, 시트, 판, 모노필라멘트,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및 그 부착물, 벨트 및 유사제품, 합성피혁
포 장 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포장용 및 운반용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포장용 혹은 운반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
	예시 플라스틱 포대 및 봉투, 운반 및 포장용기, 용기 뚜껑·마개
건 축 용 플라스틱제품	벽, 바다 및 천장 피복용 제품(롤 또는 타일 상태), 설치용 또는 저장용 용기 및 위생용품, 문틀 및 기타 구조용 조립 플라스틱제품
	예시 비닐벽지, 플라스틱 벽돌 및 타일, 세면기, 분뇨정화조, 설치·저장용 탱크 및 유사용기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물질로 성형된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
	예시 장비조립용 부분품, 공업용플라스틱제품, 전기애자 및 절연용 물품, 플라스틱제의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내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부분품
기 타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표면도포제품 등의 기타 성형제품 및 1차 형태의 가공품
	예시 스티로폴 및 기타 발포성형제품, 스폰지, 접착용 비닐테이프, 표면도포 플라스틱필름·시트, 플라스틱 헬멧 및 안전모 등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 하는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가구제품, 인형·장난감·오락용품, 끈·로프, 사무·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 제외)
	예시 플라스틱 가구, 인형, 장난감 기차, 블록, 끈, 로프, 바인드, 1회용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제외) 등

2) 개선 방향 : [표 2] 참조.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재활용품목'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중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 등 용기류는 '03년 1월부터 생산자의무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우선 실시했다.

또한 봉지, 봉투 등 필름류 포장재는 재활용 기반을 확충하여 04년 1월부터 생산자의무재활용 실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석유화학업계 및 플라스틱업계가 120억원을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유화, 고품연료화(RDF) 연구 및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포장재외 제품에는 제품부담금을 부과

하고, 원료부담금인 합성수지 부담금은 이를 폐지했다.

3.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및 기준

3-1. 부과제의 제품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은 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2) 기술개발촉진법 제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견본품
- 3) 1호 살충제 중 농약
- 4) 6호 담배 중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것

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

5) 7호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제품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액(CIF)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수입 플라스틱제품

※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은 반드시 해당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부과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4. 폐기물부담금 납부

1) 납부자의 신고 물량을 기준으로 법정 요율에 따라 납부할 부담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업체에 고지

2) 해당 납부자는 고지서 내의 납부기한 내에 인근 국고금 수납은행에 납부

3)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시에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 고지되며, 독촉고지 기한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미납시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처리

4) 납부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되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

5. 납부한 부담금 반환청구

1) 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구비서류

① 수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관세 환급 서류 예시)

②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③ 반환받을 통장 사본(납부자 명의)

6. 유의사항

폐기물부담금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법률 제39조). ☐

독 자 쥬 령 모 징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